

중대재해 사례(2019.01.13.) KOSHA-경기서부-SA-201901

본 속보는 경기서부지사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 금번 발생한 사고는 원인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재해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법적 사항 등과는 무관하며, 사례전파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배포하오니 안전 교육 등에 참조하여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리와인더기(권취기) 률러사이에 끼임

< 사고개요 >

2019년 1월 13일(일) 13:47분경 경기 군포시 소재 (주)○○○○○에서 리와인더기 (종이 등을 감는 기계)로 원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이를 확인하던 중, 작동중인 리와인더기 원지를 드럼롤 사이에 재해자의 왼쪽 손이 끼여 사망한 재해임.

* 리와인더기 : 권취된 종이를 롤형태로 재단하여 재권취하는 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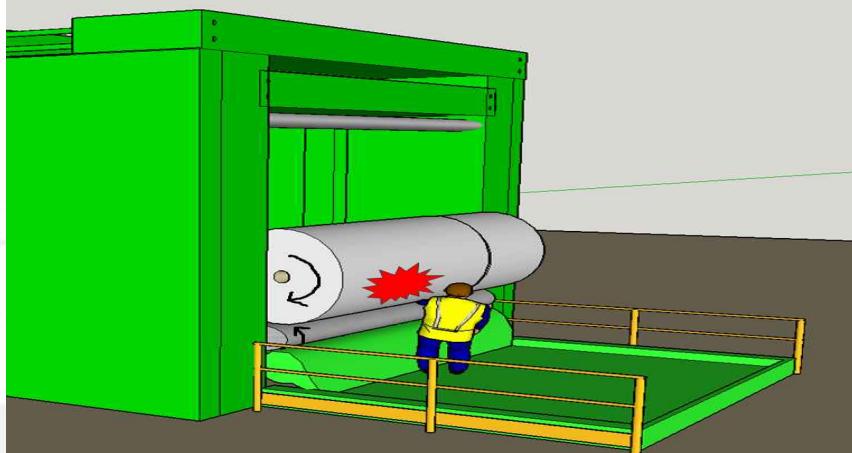


사진-1.

재해 발생상황

1 사고발생과정

○ 재해발생 공정(리와인더) 작업순서도

- 생산된 원지를 되감는 공정에서, 기존 원지를 슬리팅·리와인드 과정이 끝나고 리와인더기 회전속도를 낮게 설정 후, 새로운 원지를 테이핑작업 실시
- 테이핑작업 후, 리와인더기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 속도를 높여 확인하던 중, 리와인더기 률러사이에 왼손이 끼여 사망한 재해임



중대재해 사례(2019.01.13.) KOSHA-경기서부-SA-201901

<기인물 : 리와인더(권취기)>



- 설비명 : 리와인더
(TWO DRUM REWINDER ASS'Y)
- 전동기 : 75kW
- 지 폭 : 약 2,500mm
- 회전수 : 약 600rpm

2 사고발생원인(추정)

○ 률 회전부위에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
- 률 회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으나, 원지 연결 작업 이후에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실시

3 등중사고 예방대책

○ 회전부위에 위험방지 조치 실시

- 률 회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률러 전면부에 인터락(Inter-lock)장치가 연동된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원지 연결작업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시, 회전부위에 물리적 접근이 불가하도록 조치

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

○ 사업주가 해야 할 일

- 률러 등의 기계·기구에 방호덮개 설치 및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

○ 근로자가 해야 할 일

- 설비 조정·확인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거나 방호덮개 설치 등 기계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접근
- 기계 또는 방호장치 해제·결함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